

건강나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시 설 명	건강나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규모	대지 865㎡ 건물 365㎡
운영주체	개인운영시설	입소정원	9명
대표자	최 영 희	시설 구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 지정일	2015. 01. 07	시설물 승인일	2008. 06. 29
주 소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지슬길 110-15		
이 메 일	123jangsu@hanmail.net		
홈페이지	123jangsu@daum.net		
전 화	054) 373-7123	팩 스	054) 373-7124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입소정원 : 입소정원은 9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
 - ① 지역사회에 플랜카드를 부착하여 홍보 및 모집을 할 수 있다.
 - ② 지역주민들과의 연계를 통한 기관 홍보 및 입소자 발굴.
 - ③ 시설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④ 협약기관을 통하여 기관을 홍보하고 입소자를 발굴한다.
 - ⑤ 지역신문 또는 일간지에 광고하여 입소자를 발굴할 수 있다.

제2조(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제3조(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결핵포함 전염병유무) 1부

제4조(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관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시 계약기간을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되며, 비급여 항목은 물가의 상승률 기타 변화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

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후 1개월 간 변경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기간을 제공한다.

-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본인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 미납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고지 : 본인부담금의 고지는 매월 6~10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후 명세서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합산하여 우편, 핸드폰을 통한 문자 또는 유선전화를 통하여 고지한다.
- 징수 : 시설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익일 까지 시설명의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미납분 : 고지 및 징수를 통해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매월 2회에 걸쳐 문자 및 유선전화, 공문을 통해 재청구하고 3개월 후에도 미납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미납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면 7일 이내에 급여비용 명세서를 입소자(보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시간, 신체적 제한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 4). 합숙용(2~3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 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 9.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10. 계약서 부분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분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 1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13.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입소자는 시설물의 사용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산출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2. 관할 시장이 지정한 위탁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3. 본인부담급여비용(2026.01.01)

구 분	총수가/일	30일(본인부담금)		
		☐ 일 반	☐ 경감(12%)	☐ 경감(8%)
☐ 1 등급	74,590원	727,540	548,530	459,020
☐ 2 등급	69,210원	695,260	529,160	446,110
☐ 3 등급	63,800원	662,800	509,680	433,120

4. 비급여비용

항 목	단가/일	산출근거	월
식재료비	7,500원/30일	2,500 X 3식 = 7,500원	225,000원
간식비	500원/1일	2회 제공 500원	15,000원
합계	8000원		24,0000원

제6조(배상책임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008-66호(장기요양급여비용등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건강나라의 시설장은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시설의 장은 보험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구체적 세부사항은 시설에서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4.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는 사회적 판례를 준용한다.